

[붙임 1] (외부)전문위원 전문인력풀(Pool) 추천 안내문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표준 제정위원회**
전문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및 헌신하는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외부)전문위원 전문인력풀(Pool)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당 (외부)전문위원 전문인력풀(Pool) 후보자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동 안내문을 받으신 기관에서는 자격 요건에 맞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추천기한 2024년 2월 22일 ~ 3월 4일 18:00 까지
- 추천분야 산업안전일반/기계·전기안전/화학안전/건설안전/보건위생 분야에 한함
- 자격요건 등

【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자격 요건 】

1.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2.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적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표준제정위원회와 관련된 단체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준제정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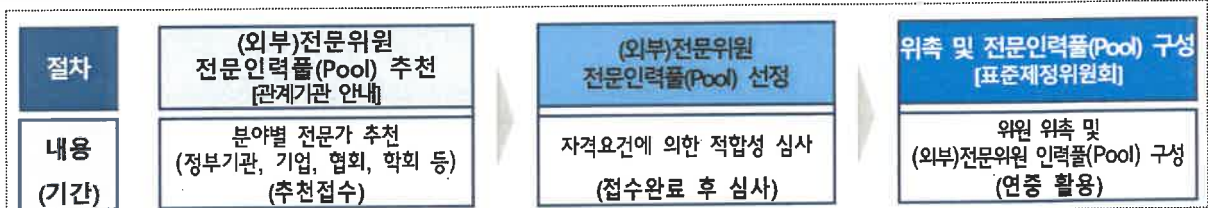
【추천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위원 추천 제한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 추천서 작성방법 [별첨1, 2, 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별첨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활용 가능

■ 추천 운영절차



① 선정된 위원은 3년의 임기동안 (외부)전문위원 전문인력풀(Pool)로 구성되고(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전문위원장의 지명으로 전문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표준제정위원회 제도 및 위촉위원의 역할 등은 [붙임2] 참고

② 전문위원회의 활동 참여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심사료가 지급됩니다.

■ 개인정보의 취급

본 추천과 관련하여 이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추천서 내용의 확인 또는 검토와 관련된 연락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및 수신

담당기관 및 담당자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기술기준부 김우태 차장

전화번호: 052-7030-593

E-mail: std@kosha.or.kr (e-mail로만 접수)

[별첨1]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추천서 양식 1부.

[별첨2] 표준제정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약력 양식 1부(작성 시 유의사항 포함).

[별첨3]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끝.